

경북대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- (주)유바이오메드

## 업무협력 협약서

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(이하 “융합진흥원”이라 함)과 (주)유바이오메드(이하 “유바이오메드”라 함)는 지역산업의 진흥 및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 지원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“융합진흥원”과 “유바이오메드”가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확립하고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항에 대하여 공동 협력한다.

1. 유용생물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 상호 협력
2. 산업 육성 및 기술사업화 공동 추진
3. 한방바이오 및 식품·뷰티산업 진흥 협력
4. 관련 융·복합 4차 산업 육성 등 기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

제3조(비밀유지) “융합진흥원”과 “유바이오메드”는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및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·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 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.

제4조(대외홍보) 양 기관은 공동 협력내용 및 사업 추진결과를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양 기관의 공동명의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협약서의 해석) 본 협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“융합진흥원”과 “유바이오메드”간 의견이 있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 관례에 따라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효력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각 기관은 본 협약서의 협력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·날인한 후 “융합진흥원”과 “유바이오메드”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2월 8일

 경북대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

 U-BioMed

원 장

대 표

 